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8
----------	------

2025년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김재진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 점검 방법 및 주기,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 1)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2)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4년에 제정('24.3.26)되었음.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 중이고 이중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운영) 예정¹⁾임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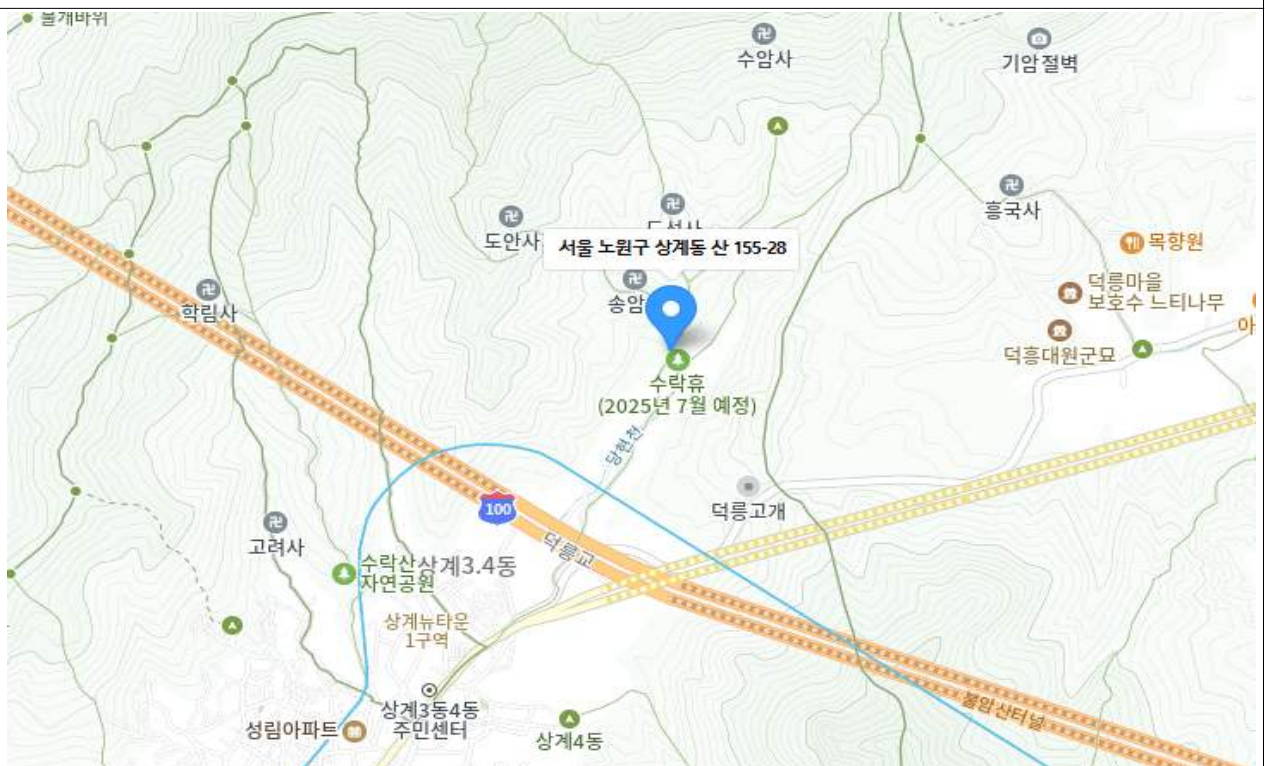
- 안 제8조제2항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직원 안전 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 및 주기’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8조제3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점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견 없음.
- 자연휴양림은 산림이라는 위치적 특성상, 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난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재난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수락산 자연휴양림: 위치(상계동 산155-28), 규모(9,800㎡), 건축면적(1,466.62㎡), 18동 25실(최대 82명), 내용(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산책로 등)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감도



지도 위치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사무위임(제17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 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및 지정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	
나.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설치) 및 관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숲길관리청”이란 숲길을 관리하는 <u>서울특별시시장·자치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u> ----- -----.
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u>시장</u> ----- ----- ----- ----- ----- --.
제8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생략) ② <u>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제8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u> <u>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u> <u>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
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
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
7조의2에 따른다.

4.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
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